

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새로운 경제발전 대안모델로 주목받는 협동조합은 지난 '12년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및 '13년 「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나. 이에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」를 '14.2.1. 개소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 및 협동조합 정책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 하였음
- 다. 이러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난 '13.9.13.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게 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개요

- 시설명 :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
- 위치 : 은평구 통일로 684(서울혁신파크 1동 6층)
- 규모 : 92.1㎡(센터장실, 사무실, 자료실, 회의실, 상담실 등)
- 조직구성 : 11명(센터장 1, 행정지원팀 2, 상담지원팀 3, 성장지원팀 5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1년('20.1.23. ~ '21.1.22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- 소요예산(안) : 1,086백만원
(인건비 526, 운영비 90, 사업비 470)
-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
 -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
 -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
 -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,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
 -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
 -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홍보
 -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해당 업무의 직접 수행시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며 신규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 우려
-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및 상담지원 경험 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역협동팀 전민재(☎2133-5478)